

# 서울북부지방법원

## 제 2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3노1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홍○○ (88○○○○-1○○○○○○), 학생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주훈(기소), 김해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고정316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3.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

업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속초시에 있는 동진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010-2269-901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킷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대포폰’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같은 조 제4호)’ 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행위는 ‘무선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전기통신시설인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



# 대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 건 2013도60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홍○○ (88○○○○-1○○○○○○), 학생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3노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

주 심 대법관 박보영 \_\_\_\_\_

대법관 김 신 \_\_\_\_\_